

정 관

CJ씨푸드 주식회사

## 목 차

제 1 장 총 칙 .....	5
제 1 조    상 호 .....	5
제 2 조    목 적 .....	5
제 3 조    본점 및 소재지 .....	5
제 4 조    공 고 .....	5
제 2 장 주식 .....	6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	6
제 6 조    1주의 금액 .....	6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제 8 조    주식의 종류 .....	6
제 8 조의2 제1종우선주식 .....	6
제 8 조의3 기타우선주식 .....	6
제 8 조의4 의결권배제주식 .....	7
제 8 조의5 전환주식 .....	7
제 8 조의6 상환주식 .....	9
제 9 조    주권의 종류 .....	10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10
제 10 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제 11 조    시가 발행 .....	11
제 11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11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	13
제 13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	13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3
제 3 장 사채 .....	14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	14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15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15
제 4 장 주주총회 .....		16
제 18 조	소집시기 .....	16
제 19 조	소집권자 .....	16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16
제 21 조	소집지 .....	16
제 22 조	의장 .....	16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6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	17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17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17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17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17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17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		18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18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18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18
제 33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18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18
제 35 조	이사의 업무 .....	19
제 35 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	19
제 35 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	19
제 36 조	감사의 직무 .....	19
제 37 조	감사의 감사록 .....	19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19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	20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	20
제 4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20

제 42 조	상담역 및 고문	20
제 6 장 계 산		20
제 43 조	사업년도	20
제 44 조	재무제표의 작성비치	21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21
제 45 조의2	주식의 소각	21
제 46 조	이익배당	22
제 47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22

## 부 칙

1. 시행일 .....	23
2.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	23
3. 세칙과 내규 .....	23
4. 규정외 사항 .....	23

## 제 1 장 총 칙

### 제1조(상호)

당 회사의 상호는 “CJ 씨푸드”라 하며, 한글로는 씨제이씨푸드주식회사라고, 영문으로는 CJ Seafood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원양어업
2. 수산업
3. 무역업
4.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5.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7. COMPUTER HARD WARE, SOFT WARE 개발 및 판매업
8. 물류업
9. 선박운항대행 및 관리업
10. 인터넷, 방송, 신문 및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11. 상기 각 항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 제3조(본점과 소재지)

1.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2.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지역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jseafood.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

###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1.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8조의 2(제1종우선주식)

1. 당 회사가 발행할 제1종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85만주로 한다.
2.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3.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본조의 우선주주는 그 발행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의3 (기타우선주식)

1. 당 회사가 발행할 기타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2.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배당 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5.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6. 당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7. 존속기간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의 준용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제8조의4 (의결권배제주식)

1.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의결권 배제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3.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제1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동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의5 (전환주식)

1.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전환주

식을 발행 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3. 전환주식은 이사회의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 할 수 있다.
4.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당 회사는 전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6. 전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 할 수 있다.
  -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 사유를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 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7. 전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 제8조의6 (상환주식)

1.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2.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 할 수 있다
  - ①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①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

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다만, 당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다.
  - ④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한다.
5. 당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 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으로 한다.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당 회사가 이사회의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 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

- 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5.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다.
6. 당 회사는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당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 제10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시가 발행)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 2(주식매수선택권)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의결의로 상법 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당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상법시행령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제8조의2 내지 6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②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③ 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명의개서 대리인)

1.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1. 주주와 동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 한다.
2.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채

####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있다.
  - 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9조제1항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

## 식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보통주식 2백억 원, 제8조의2 내지 6의 종류주식 [2백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 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9조제1항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①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2백억원, 제7조의2 내지 6의 종류주식 [2백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 14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18조(소집시기)

1.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9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소집통고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업장인 성남공장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 제22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당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감 사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수)

-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으로 한다.

####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기까지로 한다.

####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임한다.
2.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5조(이사의 업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5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1.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가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제37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의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4.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41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계 산

#### 제43조(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대차대조표
  - ② 손익계산서
  - ③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당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당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당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이익금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 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 ② 기타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 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⑥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제45조의 2(주식의 소각)

1. 당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및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등 소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46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식배당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47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 < 부 칙 >

#### 1. (시행일)

- 이 정관은 1976년 3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8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8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2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의3항,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이 정관 제8조의2를 적용한다.

## 3. (세칙과 내규)

당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3. (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단,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